

불교문화콘텐츠 권리강화를 위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매뉴얼 및 사례 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본 보고서는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의미와 유형을 소개하고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사찰의 대응방법과 이해를 돕고자 일반적인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사찰에서는 본 보고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면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많은 걱정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간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불법 다운로드와 배포로부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권리를 존중하여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우리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교문화유산은 공공재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특별한 제약 없이 가공되고 활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사전 허가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간의 인연을 중시하는 불교적 정서는 ‘불교문화’와 ‘재산권’을 연결 지어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사찰 행정을 담당하는 주지스님이나 실무자에게 사실상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불교문화가 본래 의도와 달리 왜곡되어 떠돌아 다니거나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불교문화 지적재산 원소유자인 사찰과 종단의 적절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사찰에서 실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여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의미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불교문화 지적재산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단계부터 진행단계,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실었습니다.

특히 상황별 계약서는 인터넷포털, 방송, 영화, 음악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여 사찰 스님과 실무자들이 부담 없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며 실제 사찰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일반적 인 사례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1,600년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을 지켜내고 만들어 낸 소중한 자산인 불교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문화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흐름과 변화를 계속 수집할 예정입니다. 부디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 불교문화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인식과 대응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주) 한국문화산업연구원 대표겸 연구책임자 김형진 변호사에게
보고서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불기 2557(2013)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불교문화콘텐츠 권리강화를 위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매뉴얼 및 사례 보고서**

차 례

I. 불교문화 지식재산권 개요	1
II. 단계별 주의점	8
III. 매체별 주의점	16
IV. 상황별 표준계약서	23
V. 사 례	35

I.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개요

I. 불교문화 지식재산권 개요

우리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입니다.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종단에는 소중한 민족의 문화유산과 지식재산이 많이 있으므로 방송이나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수행법뿐만 아니라 법회나 불교미술, 음악은 물론 음식 등 불교의 지식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요청이나 촬영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이처럼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무척 좋은 일이지만 또한 조심하여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경우 지식재산의 이용에 대해 외부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생각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찰에서 이 문제를 맡는 스님들이나 종무원들이 전문적이거나 법적인 이론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외부의 제작자들이 제작협조 요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는데 다음에는 먼저 지적재산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사람들이 문화적 창작 활동과 과학기술 활동을 하여 만드는 것을 뜻하며 다른 말로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지식재산권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법률이나 상황에 따라 발명가, 상표권자, 등록자, 창작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땅주인이나 건물주가 자기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듯이 지적재산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또 아무런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킨다는 기본적인 목표 이외에도 국민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시키며 외국의 투자를 촉진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지적재산권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그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스스로의 지식재산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자들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성격은 이러한 법적 장치를 통해 지적재산권자들의 창의성을 북돋아주어 더욱 많은 발명과 창작물이 세상에 나오으로써 사회 전체가 이득을 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은 크게 보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첫 번째로 저작권은 문화 예술분야의 작품들처럼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사망한 이후에도 70년까지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사망한 이후에도 70년까지 보호받으며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저작권자인 경우에는 공포된 이후 70년간 보호받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상표권이 있습니다.

이 중 먼저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등록후 20년간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개선은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실용신안권은 물건에 대한 고안이나 개량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와 비슷하지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정도의 낮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기간은 특허보다 짧은 1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물건이나 글씨체의 아름다운 형상, 모양이나 색깔 등을 보호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등록일부부터 10년간입니다. 탑이나 부도 또는 불교용품의 새로운 모양을

보호하려면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자기를 나타내는 상표를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영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을 상표로 보지만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 밖에도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가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합천”이나 “순천” 처럼 뚜렷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인사” 또는 “송광사”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의 등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과는 달리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은 특허청(www.kipo.go.kr)에서 담당합니다. 또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은 대체로 정부에 등록을 한 뒤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저작권의 보호 기간보다 짧습니다. 다만 그 중 상표권은 10년마다 권리를 갱신할 수 있으므로 영구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은 문화관광부에서,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은 지식경제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등록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직접 할 수도 있으나 특허와 같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리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외주 계약과 권리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작품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사람의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찰에서 비용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작품에 대해 권리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 부탁하여 영상물, 음악, 그림, 조각, 공예 등 일체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품에 대한 권리가 사찰에 속한다는 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작품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 문화부에 문의해주시시오.

3.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의 뜻

불교문화지적재산권은 일반적인 지적재산중에서도 특히 불교에 관련된 작품으로 불교 종단, 사찰, 승려 또는 관계인들이 만들었거나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앞으로 불교계가 불교지식재산의 보호, 관리 및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교계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교지식재산이 활용될 경우 불교계의 뜻과는 달리 불교지식재산이 잘못 사용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불교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또한 엄청납니다. 불교지식재산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장기적으로 사찰과 종단에 중요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불교문화지적재산의 종류

불교문화지적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	내용	예시
출판물	불경과 불교 관련 문헌을 말하는 것	직지심체요절, 삼국유사, 팔만대장경, 돈황유물(오타니컬렉션)
설화	문헌에 기록되거나 구전해오는 불교의 전설이나 설화	오세암 설화, 상원사 고양이설화, 전등사 나녀상 전설
불교미술	탱화	해인사 수월관음도, 회암사 약사삼존탱화, 통도사 삼신각부탱화
	회화	금산사 미륵전 벽화, 은해사 석가오존도
	서예	탄허스님 칠언구(통도사), 서산대사 행초 정선사가록
	디자인	송광사 단청, 상원사 단청, 운문사 단청
	캐릭터	봉은사 캐릭터
	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서산마애삼존불상, 경주남산불곡석불좌상
	전각	해인사 대적광전, 통도사용화전, 송광사관음전
	탑	불국사 석가탑, 불국사 다보탑,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석탑, 분황사 석탑
	석비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연곡사 동부도비
	석등	법주사 쌍사자석등, 부석사 석등, 부인사 석등, 불국사 석등
	부도	송광사 부도, 해인사 부도, 통도사 부도
	사물(범종, 법고, 목어, 운판)	성덕대왕신종, 상원사동종
	당간지주	동화사 당간지주, 양양 현동당간지주
	사물	불국사, 선암사, 전등사, 송광사
석굴 / 조형물	토함산 석굴암, 군위 삼존석굴	
의식과 의례	불교의식과 의례	다비식, 연등회, 예수재, 영산재, 천도재

불교 생활	전통지식이나 무형문화유산에 속하는 물품	생활용품(법복, 승복, 생활복, 수행화등 신발, 모자, 가방 또는 걸망) 전통의학(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치료법) 건강법(요가, 좌선, 명상, 식이요법, 태교법) 음식/조리법(발우공양, 사찰음식 조리법, 다도) 사찰 예절(합장법, 법당 출입예절, 도량예절, 공양예절, 인사법) 불교용품(염주, 합장주, 목탁, 부적, 향, 향로, 양초, 촛대 등)
상징물 또는 기념품	실제로 수행이나 의례 의식 또는 생활에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라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적 상징물이나 기념품	음반, 손수건, 부채, 책, 책갈피
언어적 표현	불가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말씀	선시, 오도송, 염불, 법문, 열반송, 임종계
불교 음악	의식, 의례 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음악적 표현	범패, 화청, 회심곡, 찬불가, 불교성악곡, 명상음악
신체 동작	의식, 의례 또는 수행에 표현되는 신체적 움직임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타주춤 등의 작법 또는 범무, 수인, 절, 불교무술
수행 방식	수행의 방법	염불, 좌선, 선, 명상, 면벽수행, 동굴수행, 하안거, 동안거 등 여러 수행 방식
영상물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동영상	조계종단에서 제작한 “법회의식동영상” 처럼 불교계 내부에서 제작한 동영상과 “봄여름가을겨울”, “달마가 동쪽에 단 까닭은”, “오 세암” 처럼 외부에서 불교를 소재로 제작한 동영상
방송물	TV와 라디오	불교 TV나 BBS 불교방송 등 TV와 라디오등을 통해 방송된 불교 프로그램
출판 / 언론	불교 관련 출판사 혹은 언론사에서 보도하거나 출판한 모든 인쇄물	불교신문, 법보신문 등 신문사 및 잡지사, 불교닷컴, 부다피아
만화	애니메이션이 아닌 만화 형태로 출판된 것	“만화화엄경”,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박물관	성보, 기념물, 유물을 저장한 곳	종단에서 운영하는 불교중앙박물관과 사찰에서 운영하는 성보 박물관은 물론 목아박물관과 같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공연	연극, 뮤지컬, 오페라, 비언어극 등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원효”, “아미타불”, “승리자(Die Sieger)”, “대장경”, “원효대사”, “야단법석”
여행	방문과 체재	성지 순례, 사찰 순례, 템플스테이(temple stay), 템플라이프 (temple life)
게임과 놀이	전통 놀이와 디지털 게임	“성불도놀이”, “니르바나”
디지털 및 모바일 프로그램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반야심경”, “금강경강의”, “템플스테이”, “헬로우 달마스쿨”, “울댓마음공부”
불교 용어	불교계 밖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불교 용어	해우소, 휴급소, 축령산, 안양시, 미아동, 화두, 극락, 지옥, 각색, 인간

II. 단계별 주의점

II. 단계별 주의점

외부의 제작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전체 과정을 대체로 협의단계, 제작단계, 그리고 제작 후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처음의 협의단계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많은 걱정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협의 단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의 협의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채 제작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그 후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때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작이 진행되는 도중 사찰과의 갈등으로 인해 제작이 중단되면 제작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사찰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주요사항

외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사항에 대해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A. 상대방 회사의 이름

제작사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제작사를 확인합니다. 가령 제작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고 또 제작사에 대한 뉴스 검색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의 본사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제작자나 감독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신용이 있는지의 여부는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중요합니다. 가령 제작 중 도난이나 상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계약 당사자와의 연락이 끊어지게 되거나 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B. 작품 이름과 성격, 내용

만약 내용이 불건전하거나 외설적이면 곤란하므로 작품의 내용이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제작 계획서 또는 시나리오 등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 협조 요청의 구체적 내용

사찰의 역할과 제작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찰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사찰의 어느 장소에서 촬영이나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의 출연이나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로 간에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기간과 시간
- 2) 구체적 장소
- 3) 사용기자재
- 4) 요청 자료 목록
- 5) 출연 요청 인물 목록

D. 참여 인원

제작을 위해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 1) 현장책임자
- 2) 모든 참여 인력의 이름, 직위 또는 역할, 주민등록번호

E. 작품 마케팅

- 1) 작품 공개시기
- 2) 작품 마케팅 계획
- 3) 예상 매출액

F. 계약 당사자

사찰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가 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PD나 작가는 실무담당자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대체로 회사의 대표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 부서장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촬영의 경우 촬영을 하는 회사가 영화사나 방송사가 아니라 외주 회사일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G. 서면 계약

서로 간에 협의를 진행할 때는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엇갈린 약속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합의되거나 약속된 내용에 대해 서로의 기억이 엇갈리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합의된 모든 내용을 자세히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각 상황에 따른 표준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2) 현장 책임자

실제로 경내에서 제작이 진행될 경우 누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작과정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수수료 등 금전 문제

사찰이 제작에 협조하는 대신 협조에 따른 수수료를 제작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수수료 지급 원칙

수수료는 가급적 선금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B. 환불 조건

입금 후 제작사의 사정으로 제작이 취소될 때에는 환불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1) 제작 개시 시간 72시간 이전 - 전액 환불
- 2) 제작 개시 시간 24시간 이전 - 50% 환불
- 3) 제작 개시 시간 24시간 이내 - 환불불가

C. 수수료의 기준

수수료는 1회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를 1시간, 3시간, 또는 하루(8시간) 등으로

(4) 환경

제작사는 제작과정 중 발생하는 쓰레기 및 오물의 처리 문제에 대해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 인원들이 경내에서 작업할 경우 읍은 그들의 식사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충분한 숫자의 간이 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예의

제작 인력은 사찰이 신성한 도량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에 대해 예의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노출이 심하거나 난잡한 복장은 곤란하며 고성방가와 욕설등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6) 기록

사찰은 제작과정을 따로 촬영과 녹음 등 방법을 통해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물은 추후 사찰의 홍보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스님/종무원의 출연

간혹 스님이나 종무원들이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크레딧

출연한 스님들이 프로그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B. 출연료

미리 정한 금액의 출연료를 출연 종료 즉시 받으셔야 하며 보통 출연을 위한 대기 시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므로 출연료는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당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C. 내용

작품의 내용이 불교, 종단, 또는 스님들에게 부적합한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님들이 출연한 부분을 제작사가 마음대로 편집하여 불교계나 사찰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시간과 장소 제한

사찰 내의 제작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락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 시간에서의 제작 행위나 장소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작 인력의 화장실 사용 문제와 식사 문제를 잘 살펴보아 경내의 질서와 수행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9) 전담 인력

외부인의 제작 협조 요청이 있으면 사찰은 먼저 사찰 내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후 사찰 내에서 제작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사찰의 담당자가 항상 제작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제작자가 계약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작 단계

제작은 경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작이 경내에서 진행될 경우 제작 기간이 단지 반나절에 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적겠지만 여러 날 또는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제작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여 인력이 경내에서 발생시키는 소음과 소란도 문제이고 식사와 화장실 사용 등으로 인해 경내가 매우 번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촬영은 강한 조명과 소음으로 생활과 수행에 커다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 인력들의 폭언, 음주가무, 다툼 등의 행위가 스님, 종무원은 물론 신자들이나 관람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소음과 조명

제작과정에서 많은 인원과 장비들이 발생시키는 소음, 음악, 강한 조명 등이 사찰 내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적절한 제한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 촬영이 있을 예정인지를 확인하고 야간 촬영 시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제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안전

제작사는 음주가무, 각종 사고와 폭력 등 제작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문제에 대해 이를 방지 또는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작과정에서 폭발, 화재 등의 상황이 연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제출되는 계획서를 검토하여 위험한 인화물질이나 오염물질이 사용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가급적 심야 촬영이나 경내 취침은 삼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훼손 도난

제작사는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 개인 소지품 등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또한 제작과정 중 사찰 안에 있는 정보를 비롯한 각종 재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도난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종료 단계

제작이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최종작품

최종작품은 처음에 합의된 대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가령 제작자가 처음에는 불교나 사찰에 대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겠다고 하여 사찰의 동의와 협조를 얻은 뒤, 나중에 선정적인 영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작품의 활용

제작사는 최종작품은 물론 작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제작자가 그러한 정보들을 제삼자에게 광고와 홍보를 포함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작사는 최종작품과 그러한 정보들을 처음에 약속한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 사찰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3)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

저작권은 작품에 대한 권리를 뜻할 뿐 아니라 추후 작품에 대한 편집·변경권, 또 작품의 활용에 따른 수익의 배분 문제와도 중요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후속 작업

제작이 종료된 이후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크레딧

작품이 공개·유통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아 중간과정에서 사찰의 이름이 삭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B. 정산

사찰의 입장에서는 작품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수익에 대해 권리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활용에 따른 수익에 대해 제작자가 사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제작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 사찰에서 그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C. 활용

최종작품의 활용에서 사찰과 관련된 부분이 원래의 제작의도와 달리 편집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사찰 동영상이 음란하거나 저속한 프로그램에 첨부되거나 삽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D. 사찰 재산의 위탁

때로는 사찰 소유의 정보나 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위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여 위탁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가령 도록이나 화첩, 안내 동영상 등의 작성을 위해 해당 정보/문화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물론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 정보/문화재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III. 매체별 주의점

III. 매체별 주의점

아래에서는 각 매체별 주의점 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인터넷 포털

(1) 정보의 정확성

포털 사이트에서 사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찰이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또 바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사찰이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포털에 사찰이 소개되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제삼자가 제공하는 정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정확성이나 적합성을 살펴본 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한 측에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삭제요청

포털에 게시된 글이나 내용이 불교, 종단 또는 사찰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총무원 문화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찰 스스로도 포털 사이트에 이러한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한 이후에도 포털 사이트가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주지 않을 때에는 포털 사이트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 후에는 그러한 기록을 잘 간직하여야 합니다.

2. 방송

(1) 외주제작사

방송사가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의 상당수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방송사와 관련이 없는 외주 제작사가 만들고 방송사는 단지 그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일부 외주 제작사 직원들이 자신의 명함에 방송사의 로고와 이름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그들은 방송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그들이 방송사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외부 제작사와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견본

프로그램의 방송이 종료되면 방송된 내용을 CD 등에 담아 보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CD에 담길 동영상은 추후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높은 품질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FULL HD 수준 이상의 화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CD는 잘 보관하여 추후 다른 용도(홍보나 광고, 교육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을 지녀야 합니다. CD 등을 받은 후에는 이를 즉시 재생하여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CD를 보내주도록 해야 합니다. 품질에 이상이 없는 CD 등은 목록에 기재한 뒤 미리 정해진 장소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미방송 작품

촬영을 마친 작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방송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찰이 표현되는 부분의 동영상을 CD 등으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래의 작품은 방송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촬영된 부분은 사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영화

(1) 작품의 성격

영화가 다큐멘터리와 같은 비상업적 영화인지, 아니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상업적 영화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사용권

영화가 성공할 경우 영화의 배경이나 소재가 되었던 사찰의 인지도가 높아지므로 사찰과 관련이 있는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찰의 홍보나 광고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견본

프로그램의 방송이 종료되면 방송된 내용을 CD 등에 담아 보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CD는 잘 보관하여 추후 다른 용도(홍보나 광고, 교육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을 지녀야 합니다.

(4) 제작중단

장기에 걸쳐서 제작이 이루어지는 영화는 중간에 작품의 제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촬영된 부분은 사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크레딧

촬영에 협조한 사찰이나 스님의 이름이 작품에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표시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4. 음악

사찰에서 불교 음악을 녹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음질

녹음의 음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녹음 과정에 알맞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편집

이미 녹음된 음원이 추후에 마음대로 편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공동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찰이 음원의 편집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3) 사용

음원이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DB)

DB의 제작과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제작

DB의 제작과정에서 반드시 사찰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찰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스님이나 직원의 개인적인 협조를 얻어 DB가 제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크레딧 표시

DB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찰의 명칭을 적절히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검색어

DB의 검색에 사용되는 검색어의 선택에서도 불교, 종단, 또는 사찰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보안 문제

DB의 저장 및 운용상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여 제삼자가 임의로 해킹하거나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치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6. 사진

성보 사진을 비롯하여 사찰이나 스님들의 사진은 가급적 전문 사진작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갖추고 있다가 외부에서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이용 계약을 맺은 뒤 이러한 사진들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인사가 사찰에서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준수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IV. 상황별 표준계약서

IV. 상황별 표준계약서

1. 인터넷 포털 자료 제공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사찰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자료 제공 계약서

대한불교조계종 _____ [사찰이름](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상대방](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이 대상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대상 자료)

제목:

내용:

형식:

분량:

제 2 조 (을의 담당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 및 주소:

회사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제 3 조 (을의 의무)

-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자료를 갑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계약상 목적, 용도, 방식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임의로 복제, 대여, 변경, 수정, 삭제할 수 없다.
- (2) 을이 단독으로 경내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제 4 조 (저작권)

- (1) 갑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2)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생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공동 저작권을 가진다.

(3) 을은 최종작품에 갑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장소 및 자료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_____

제 5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 개월간 유효하다.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면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은 양자의 서면 합의가 없이는 연장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도 이미 발생한 을의 의무는 계속된다.

제 6 조 (자료제공수수료)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과 함께 금 _____ 원 (부가세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기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갑에 대한 을의 채권 등과 상계할 수 없다.

제 7 조 (기타 협의 사항)

(1) 을이 갑 또는 조계종 소유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해지)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계약 위반이나 법률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사유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 금액 일체를 배상한다.

제 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_년_월_일

갑:

주소:

사찰명:

주지: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대표:

2. 사진 촬영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영화 또는 방송 제작사가 촬영 목적으로 사찰에 촬영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사진 촬영 계약서

대한불교조계종_____ [사찰이름](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상대방](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장소 (이하 경내라고 한다)에서 을이 작품_____ 이하 '대상작품'이라고 한다)의 촬영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사진 촬영의 내용)

일시: 년월일 부터 년월일까지 (일, 매일 __ 시부터 __ 까지)에 한한다)

장소:

촬영인원: (명)

제 2 조 (을의 담당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담당자는 연락책임 및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 및 주소:

회사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제 3 조 (을의 의무)

- (1) 을은 명시적으로 허락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경내에 안전과 청결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사진 촬영을 위해 경내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이 안전과 청결에 대한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3) 을은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경내에 반입하지 않으며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경외로 반출한다.

제 4 조 (저작권 및 기타 권리)

-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른 촬영 종료시 최종 산출물 일체를 CD 또는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오)
 - A. 갑과 을은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가진다. 또는
 - B. 갑은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사용에 한하여 무상사용권을 가진다.
- (2) 을은 최종작품에 갑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장소 및 자료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_____
- (3)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최종 산출물을 변경, 대여, 수정하거나 갑에게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 개월간 유효하다.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면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은 양자의 서면 합의가 없이는 연장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도 이미 발생한 을의 의무는 계속된다.

제 6 조 (촬영수수료)

-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과 함께 금 _____ 원 (부가세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 (2) 상기 수수료는 8시간(1일) 기준이며 만약 추후 시간이 초과되면 초과 시간당 추가 수수료 _____ 원을 지급한다. 추가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초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한다.
- (3)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기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갑에 대한 을의 채권등과 상계할 수 없다.

제 7 조 (기타 협의 사항)

- (1) 을이 갑 또는 조계종 소유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을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해지)

-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을이 계약 위반이나 법률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사유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 금액 일체를 배상한다.

(3)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경내의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즉시 퇴거한다.

제 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_년_월_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소:

사찰명:

회사명:

주지:

대표:

3. 영화 및 방송 촬영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영화 또는 방송 제작사가 촬영 목적으로 사찰에 촬영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촬영 협조 계약서

대한불교조계종_____ [사찰이름](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상대방](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장소 (이하 경내라고 한다)에서 을이 작품 _____(이하 '대상작품'이라고 한다)의 촬영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촬영의 내용)

일시: 년월일 부터 년월일까지 (일, 매일 ___ 시부터 ___ 까지)에 한한다)

장소:

촬영인원:명

대상작품의 방송(개봉)예정일자:

대상작품의 제작목적:

제 2 조 (을의 담당자)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담당자는 연락책임 및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이름:

직위: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 및 주소:

회사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

제 3 조 (을의 의무)

- (1) 을은 명시적으로 허락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경내에 안전과 청결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영화 촬영을 위해 경내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들이 안전과 청결에 대한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3) 을은 위험한 물건을 경내에 반입하지 않으며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경외로 반출한다.
- (4) 을은 경내에서 행동과 복장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 4 조 (저작권)

- (1) 을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른 촬영 종료 시 최종 산출물 일체를 CD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오)
 - A. 갑과 을은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가진다. 또는
 - B. 갑은 산출물에 대하여 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사용에 한하여 무상사용권을 가진다.
- (2) 을은 최종작품 및 최종작품의 일부를 사용한 2차적 저작물에 갑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장소 및 자료 협찬: 대한불교조계종 _____
- (3)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방송에 쓰일 자막 없는 편집본, 혹은 가편본으로 FULL HD 수준이상의 품질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컴퓨터로 재생 가능해야 한다.

제 5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 개월간 유효하다. 본 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면 본 계약에 의해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은 양자의 서면 합의가 없이는 연장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도 이미 발생한 '을'의 의무는 계속된다.

제 6 조 (촬영수수료)

-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과 함께 금 _____ 원 (부가세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 (2) 상기 수수료는 3시간(1회) 기준이며 만약 추후 3시간이 초과되면 초과 3시간당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 추가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초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한다.
- (3) 을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기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갑에 대한 을의 채권등과 상계할 수 없다.

제 7 조 (기타 협의 사항)

- (1) 을이 갑 또는 조계종소유 명칭, 이미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을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교계나 갑,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해지)

-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경내의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즉시 되거한다.

(2) 을이 계약 위반이나 법률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사유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 금액 일체를 배상한다.

제 9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_년_월_일

갑:

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소:

사찰명:

회사명:

주 지:

대 표:

4. 음악 녹음 계약서

아래 계약서는 예불이나 기타 사찰의 의식을 오디오 장치를 이용하여 녹음한 뒤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음악 녹음 협조 계약서

대한불교조계종 _____ 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오디오 CD 음반 제작을 위해 당사자들이 각각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 (사업 내용)

- (1) 사업명 : _____ 오디오 CD와 오디오 CD 음반 제작, 판매
- (2) 음반 출시일 : 20__년 __월 __일 (예정)

제 2조 (음반출시 수량)

- (1) 기본 제작 수량
 - 한정판 수퍼 오디오 CD : _____ 매
 - 일반 오디오 CD : _____ 매
- (2) 을은 제작한 수퍼 오디오 CD 중 _____ 매는 '갑'에게 증정하고, 그 외 홍보용으로 _____ 매를 사용하도록 하며 그 외 수량은 일반에게 판매한다.
- (3) 본 계약상의 음반은 을에서 기획, 디자인, 제작 및 유통을 담당한다. 단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거친 후에 제작에 들어간다.

제 3조 (음반 가격 결정)

음반의 국내 소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 한정판 수퍼 오디오 CD : 개당 _____ 원
일반 오디오 CD : 개당 _____ 원

제 4조 (수익의 배분)

- (1) 갑이 판매 수익의 _____%, 을이 _____% 를 가진다.
- (2) 판매수익이라 함은 본 음반 제작에 들어간 녹음, 편집, 디자인 등의 별첨의 제작비 내역서에 포함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 CD 제작비용(이를 '제작원가'라 칭한다)을 판매 가격에서 뺀 차액을 말한다.

- (3) 제작원가는 을이 갑에게 제시하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4) 갑과 을은 매 분기마다 판매량을 정산한다.
근거서류는 매 분기마다 '을'이 '갑'에게 제출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확인한다.

제 5조 (저작권 및 기타)

- (1) 저작권 : 저작권은 갑이 갖는다.
- (2) 을은 CD 크레디트에 갑을 적절히 표시한다.
- (3) 을은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교계나 갑,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을은 명시적으로 허락된 장소에서만 녹음할 수 있으며 경내에 안전과 청결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5) 녹음을 위해 경내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들이 안전과 청결에 대한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6) 을은 경내에서 행동과 복장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 6조 (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7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을이 본 계약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CD에 대한 제반 권리를 상실하면 재고 CD와 미수 채권을 갑에게 지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

제 8조 (비밀 준수)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갑, 을 양 당사자 외 누구에게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내용 위반, 법률위반 및 제삼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분쟁의 조정)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써 이를 해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갑'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제 11조 (계약의 해지)

- (1)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그 외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경내의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즉시 퇴거한다.

첨부 : 제작비 내역서 1부
CD 자켓 디자인 시안 1부
제작음반 견본품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01_년_월_일

갑 :

주소 :

사찰명 :

주 지 :

을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회사명 :

대 표 :

V. 사 례

사례 1 - 드라마 촬영과 법당 훼손

2010년경 수도권 어느 사찰에 당시 TV 인기 드라마의 장면들을 촬영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사찰은 흔쾌히 이를 허락했고 이어 제작팀이 사찰을 방문하여 촬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제작팀은 촬영을 위해 법당 옆에 임시벽을 설치하였다. 촬영이 끝나자 제작팀은 설치했던 임시벽을 철거하고 철수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뒤 사찰은 임시벽이 설치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등 법당의 외벽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사찰은 이러한 사실을 제작진에게 알리자 제작진은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사찰은 많은 비용을 들여 외벽을 보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찰은 이러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촬영 중 또는 촬영 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촬영 또는 제작이 종료되면 제작팀이 철수하기 전에 건물을 비롯한 재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2 - 스님들의 출연

2012년경 모 방송사가 사찰에 드라마 촬영 협조를 요청하여 드라마 촬영이 사찰 내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한창 촬영이 진행 중에 제작자는 사찰의 스님들이 드라마에 '잠깐' 출연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찰 측은 이를 허락했다. 스님들은 불교와 사찰의 홍보를 위해 좋은 뜻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좋지 않은 날씨에 장삼에 가사까지 착용한 채 촬영장에서 두 시간이나 기다렸지만 결국 그 부분의 촬영은 갑자기 취소되었다. 스님들의 출연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사찰이나 스님들은 제작자의 갑작스러운 촬영 취소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이처럼 일방적인 취소나 계획 변경에 의해 사찰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사례 3 - 사찰 장면의 사용 허락

2010년경 주요 방송사가 사찰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사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사찰은 제작을 위해 며칠씩이나 법당을 제작팀에게 비워주는 등 제작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심지어 촬영 수수료조차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협조와 도움 덕으로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그 프로그램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훗날 사찰이 스스로의 홍보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하려고 방송사에게 사찰에서 촬영한 부분을 달라고 요청하자 방송사는 사찰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찰은 저작권료의 협상이 잘 되지 못하여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사찰이 제작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램의 사용 문제에 대해 방송사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례 4 - 사진작가의 변심

어느 사진작가가 사찰을 방문하여 사찰을 소재로 사진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부탁했다. 사찰에서는 비상업적 예술 사진이라는 약속을 작가에게 받고 나서 작가의 촬영을 허락하였지만 작가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작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찰 내 제한 구역에까지 들어가서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사찰은 사진 촬영을 허락하는 대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고 계약서도 없었으므로 현행 법률에 의해 저작권을 비롯한 사진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작가가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작가는 사찰과의 약속과는 달리 사진 작품들을 상당한 가격으로 일반인들에게 상업적으로 판매하였다. 사찰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지만 작가와의 사이에 아무런 기록이나 계약이 없으므로 작가가 약속을 어겨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사례 5 - 몰래카메라와 취재

얼마 전 어느 방송사에서 불교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취재를 하고자 전문가를 방문했다. PD 등 취재진은 인터뷰 중에는 일체 녹음이나 촬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D는 몰래 인터뷰 전체를 녹화했다. 또한 전문가가 문제에 대해 자세히 불교계와 종단의 입장을 설명하였음에도 정작 방송된 내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편집하여 불교계의 의견은 방송 내용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불교계의 의견은 왜곡되거나 무시되어 상대방의 주장만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송이나 언론의 성격상 불행히도 이러한 일들은 종종 일어난다. 사찰의 담당자는 외부인 특히 언론과의 인터뷰에 더욱 조심하여야 하며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찰이나 종단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 권리강화를 위한 불교문화 지적재산권 보호 매뉴얼 및 사례 보고서

1판1쇄 발행 : 201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전화 02-2011-1770, 이메일 psj002@buddhism.or.kr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